

제 295회 임시회
2010. 10. 13.(수)

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— 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심 사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외 6인

(임헌경, 최진섭, 최병윤, 김봉희, 박문희, 권기수, 최미애)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10년 9월 14일/ 2010년 9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4회 정례회 (2010년 9월 16일)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토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헌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재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재 조정(안 제3조)
 -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이관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 수석운영전문위원 고일준)

- 임헌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, 충북개발공사 기능으로 살펴볼 때 본조례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제 안 · 심 사 : 원안 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 부 서 류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에 “라.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정책복지위원회 가. (생략) 나. <u>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</u> 다.~바. (생략) 5. 건설소방위원회 가.~다. (생략) <u>< 신설 ></u>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정책복지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< 삭제 ></u> 다.~바. (현행과 같음) 5. 건설소방위원회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</u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제58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